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99호
----------	------

2017. 12. 20.

건명	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사회적경제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7. 11. 17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11. 17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」 및 「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의 개정으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의 변경과 이주직원보조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‘투자보조금’ 및 ‘이전 및 투자기업’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‘투자보조금’을 ‘설비투자보조금’으로 변경 정의하고 ‘이전 및 투자기업’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)
- 입지보조금 지원범위를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 금액의 40% 이내로,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범위를 동 기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14% 이내로 각 변경 규정함(안 제14조제3항제2호)
- 수도권 소재기업 소속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‘이주직원보조금’ 지원과 지원취소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14조의2, 안 제21조제1항제9호·제10호)

### □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 제13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